

韓國 軍事運營分析 學會誌  
第 11 卷 第 2 號, 1985.12.

## 郷土自衛体制로서의 「民堡防衛論」考察

張 炳 玉 \*

### 1. 序 言

歴史的으로 無數한 外侵속에서도 國土와 文化를 지켜온 우리 民族의 國防能力을 理解하는데는 精神文化的 側面과 軍事運用的 側面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軍事運用的 側面은 軍事編制, 戰略·戰術, 武器體系 등 各 分野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軍事編制分野는 오늘날의 우리의 主要한 國防의 手段으로 되어 있는 豫備軍制度를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先行概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軍事編制는 그 構成上 國家次元에서 이루어지는 公兵 즉 國軍體制와 民間次元에서 形成되는 郷兵 즉 民兵體制로 區分할 수 있다. 歴史的으로 볼 때에 公兵 즉 國軍體制가 國土防衛의 主役을 擔當하여 온 것이 事實이긴 하지만 그동안 잦았던 外侵에 대처하기 위하여 全 郷民力량의 防衛力化를 自生的으로 꾀하여 온 郷民自體防衛體制가 우리나라 國家防衛의 重要한 機能을 遂行하여 온 것도 看過할 수 없는 것이 事實이다.

現行 우리의 地域單位 郷土固守防衛를 위한 豫備軍制度는 根本的으로 이와같은 우리 固有의 歷史와 傳統에서 由來된 것인데도 불

구하고 마치 이것이 美國이나, 스위스, 이스라엘 등 外國制度에서만 由來되었거나 模倣된 것으로 잘못 認識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本稿는 이러한 側面에서 우리의 豫備軍制度의 正統的 뿌리(源流)를 찾고, 1987년부터 段階的으로 實施하게 되는 地方自治制와 郷土自衛概念을 연결함으로써 우리나라 固有의 正統性 있는 豫備軍制度의 發展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가장 教訓的이라고 생각되는 茶山 丁若鏞<sup>1)</sup>이 主張한 郷民中心의 郷土自衛體制인 「民堡防衛論」의 內容을 考察하여 이로부터 教訓을 提示하고자 한다.

### 2. 「民堡自衛體制」의 基本概念

朝鮮朝 前期의 國防力의 中心은 全國에 軍事管轄區域別로 編成되어 있는 鎮管體制下的 常備官軍 戰力이었다. 즉 地方行政組織을 토대로 鎮을 設置하여 有事時엔 各 鎮單位로 「自守自戰」하는 地域單位 防衛體制였다.

그러나 鎮單位 防衛體制를 실현함이 있어서 不條理(放軍收布, 代役納布: 布木만

\* 國防管理研究所

바치면 軍役을 면제)의 만연으로 인하여 自然 實兵力數가 격감되어지는 현상이 發生하였다.

이렇게 絶對 兵力數가 부족하여짐에 따라 소수의 兵力으로 防衛機能을 遂行하기 위하여 「制勝方略」이란 새로운 防衛體制가 提示되었던 바, 이것은 戰爭勃發時 敵의 主要豫想接近路上에 絶對的으로 부족한 소규모의 兵力을 集中的으로 投入함으로써 敵을 最前線에서 격퇴하자는 據點防衛作戰 概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兵力數의 激減趨勢에 부응하려는 임기응변책에 불과하였다. 즉 最前線에서 「敵을 制壓할 수 있다 (制勝)」는 그 策略만으로는 理想的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希望事項에 불과 하였을 뿐이며, 量과 體制面에 있어서 實質的인 것은 되지 못하였다.

예로서 壬辰倭亂 (1592)時 敵의 大規模 侵入을 當하여 防衛司令官에 임명된 李鎰이 鳥嶺에 到着했을 때 그곳에 있어야 할 兵士들은 이미 大邱에서 惡戰苦鬪를 당하고 있었으며 결국 漢陽은 불과 數日만에 敵의 手中에 함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戰亂을 겪은 후 鄉土防衛體制는 「民堡防衛體制」라는 하나의 획기적인 防衛體制로 發展하였다. 즉 이것은 鄉民의 土着的 性向을 根源으로 生存基盤으로서의 鄉理에 對한 愛着心과 民族的 레지스탕스 精神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丁若鏞은 「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라 하여 平時부터의 國防體制의 準備가 重要함을 강조하면서 國土가 협소하면서도 山地가 많고 南北으로 지형격질이 뚜렷하다는 우리나라의 地勢의인 특성에 착안하여 山城을 위시하여 各種 地形의 형태에 따른 城堡를 構築하고 이를 “목” 즉 據點 (strong point) 으로 하는 鄉土防衛體制를 「그물형」

으로 構築함으로써 戰略上 저항의 縱深을 確保하여 淸野戰式의 防衛體制를 主張하였다. 여기서 淸野戰이라 함은 分散된 數個 마을에 거주하는 鄉民과 物資를 戰略的 據點位置를 차지하는 要衝地의 마을로 集結시켜, 한개의 戰略據點 마을을 固守하는데 必要한 戰力上的 限界戰鬪力을 構成함과 同時에, 모든 食糧 및 物資를 敵으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焦土化戰術을 의미한다.

이러한 「民堡防衛戰術」은 戰爭경보발령과 同時에 各 鄉村住民들이 官의 징병절차 없이 그들의 財物一切을 가지고 各地域의 要衝地인 戰略據點 마을에 構築된 「堡壘」에 集結함으로써 現地보급원을 봉쇄당한 亂에 對하여 淸野戰에 依한 유격戰을 展開한다는 것이다.

「民堡防衛體」는 當時의 社會心理의 動向에도 부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官側의 經濟的 實利에도 기여하는 바도 컸다. 즉 兵亂이 발발했을 때 官의 徵兵없이 鄉民 스스로 그들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할 수 있는 制度的, 物質的, 臨戰方法에 對한 教育的 여건만 부여된다면 가장 經濟的이고 즉응적인 體制이며 특히 鄉民의 鄉村에 對한 擬集力을 基礎로 한 까닭에 가장 강력한 精神戰力으로 武裝될 수 있었다.

이러한 “鄉民에 依한, 鄉民을 爲한, 鄉民의 自衛體制” 下에서는 戰·平時를 막론하고 生業 (農作등)을 지속할 수가 있으며 官의 財政的 出血을 必要로 하지 않기 때문에 實利의 이었음이 틀림없다.

「民堡」는 根本的으로 既存의 鄉村秩序를 維持하는 範圍內에서 運營되었다. 왜냐하면 非常事態下에서 「民堡」가 즉각적이고도 혼돈없이 戰爭에 임하기 위해서는 鄉村秩序의 急激한 變化에서 오는 混亂을 防止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民堡據點」은 防衛作戰遂行上 一時的으로 確保했다가 戰況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임시적 據點이 아니라 그것은 鄉民의 生存圈의 基盤으로서 固守해야 하는 「死活의 決戰場」으로 認識하였음은 매우 意味있는 內容이라 할 수 있다.

### 3. 「民堡」의 組織·編成 및 內規

單位地域 鄉村民의 入堡收容이 完了되면 이들로부터 民族防衛의 核心役割을 擔當할 수 있는 16~55才의 壯丁으로는 丁軍<sup>2)</sup>을 編成 하였다. 民堡는 丁軍의 人員數에 따라 組織의 規模를 <表1>과 같이 5種으로 分類하였으며, 人員이 30名(1旗) 미만인 경우에는 人接堡의 指揮를

表1. 民堡種類別 人員數

種 類	人員(名)
玄 堡	30
小 堡	60
中 堡	90
大 堡	120
元 堡	150

받도록 하였다.

또한 民堡의 幹部構成은 <表2>와 같으며, 不具者 病弱者 그리고 木工 冶匠 등

表2. 民堡幹部構成表

職名	人員數	業 務 內 容
堡長	1	堡內全員의 食생활감독·관리 및 질서유지, 丁軍以外人員의 使役統制.
堡總	1	軍備·전투 등  군사업무 담당
堡史	2	堡內 문서관리·행정업무 담당
管庫	2	堡內  재산·식량의 보존과 出納
監作	1	軍器의 수리 및 제조
掌藥	1	堡內 醫務사항 담당

技術者는 散軍으로 編成하여 構成員의 能力에 따라 별도의 적절한 任務를 부여하였다.

入堡한 人員中 丁軍, 散軍에 編成된 以外의 人員은 <表3>과 같이 編成하여 各者의 勞動力水準에 適合한 戰鬥支援任務를

表3. 民堡勞動編成表

編成名	構 成 員	勞 動 內 容	편성단위	비 고
兒 軍	8세~15세 男	돌·물·땀감 등의 운반 및 채취	10 명	
老 軍	56세 이상 男	毒灰, 竹埤(죽비), 曬席(쇄석)의 제조, 牛馬의 飼育	"	
散 軍	30세 未滿의 丁軍 零崎免編者	閒地의 警備 및 丁軍의 補充役	"	
"	貴 族 婦 人	衣服·天幕류의 수선	"	
"	賤 族 婦 女	炊食 및 給食, 땀나무 조달	"	
"	窮愁한 老嫗와 老 (노환)	堡內外의 야간 前哨로써 強盜의 접근을 早期에 경보해 줌	"	괘과리를 지참하고 개를 동반

부여하여 종사하도록 함으로서 부녀자까지를 포함한 全國民이 總力防衛에 참여토록 하였다.

當時의 民堡體制는 海岸·島嶼地方에는 海島堡를 全國에 산재하여 있는 山寺에는 山寺堡를 設置하여 民堡防衛體制의 사각지대를 허용치 않으려 하였음은 防衛體制의 완벽성을 위한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戰時 民堡共同體 生活는 自體內의 軍律에 따라 엄격히 統制되었던 바, 그중 특히 食糧에 對한 規制를 살펴보면 入堡時 鄉民各自가 入堡시킨 私有食糧 一切를 堡長에게 納入하면 堡長은 <表4>의 基準에 따라 均등히 이를 配給하였다.

表4. 民堡單位 食糧配給表

糧種	배급량 대상	非戰鬥時	戰鬥時
		軍	丁軍 및 幹部
糧	散 軍	1升 (朝·夕 各 五合)	2升一合 (朝夕·夜 各 七合)
3) 賑糧	4세~6세	2 合	
	7세 以上 男女老 少	4 合	

#### 4. 「民堡」의 戰術的 運用

「民堡」를 鄉村單位로 設置하고 이를 鄉民自力으로 防衛한다는 것은 戰鬥力 上에 限界가 있기 때문에 高을 守衛은 高을 內의 天然的인 地勢의 利點을 갖는 軍事的 要衝地에 官堡<sup>4)</sup>를 設置하고 이와 民堡와를 연결하여 運用토록 하였다.

또한 民堡單位 戰鬥力의 限界를 보강하기 위하여 官堡와의 相互支援體制를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근의 堡가 敵으로부터 攻擊을 받을 境遇, 그 攻擊이 ;

- 1日間 계속될 때는 30哩以內의 諸堡가
- 3日間 계속될 때는 60哩以內의 諸堡가
- 5日間 계속될 때는 90哩以內의 諸堡가

各各 義務的으로 支援을 하도록 하였다.

民堡와 官堡를 有機的으로 연결함으로써 淸野戰으로 補給源이 단절된 敵에 對하여 民堡를 中心으로 한 게리라戰과 地方官軍 및 中央政府에서 運用하는 精銳打撃隊로 波狀攻擊을 감행하여 敵을 섬멸하려는 戰術은 우리 祖上들이 독자적으로 창안해낸 焦土戰과 유격戰을 配合한 傳統的인 戰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民堡防衛體制를 통한 鄉村防衛目標에 全體 鄉民 個個人의 目標가 일치되도록 調和 (Goal Congruence) 시켰음은 當時의 社會構造 및 統治體制下에서는 매우 先見的 制度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5. 結 言

「民堡防衛體」는 地域單位 鄉村共同防衛體를 意味하고 가장 凝集力이 강하게 作用하는 鄉村民의 歸巢本能의 발로인 地緣性과 血緣性을 基礎로 한 共同運命意識을 地域單位 鄉村共同防衛體를 통하여 戰鬥力으로 전환한 防衛體制이다. 즉 「民堡」는 戰略的 要衝地에 設置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의 固定된 生存圈의 基盤인 「死活의 決戰場」으로 認識되었다.

이러한 概念은 鄉村防衛體制를 規程이나 規制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鄉村民의 自然發生的인 地域單位 生存圈을 守護하려는 結集力을 제대로 無理없이 系統化 하려는 것으로서 現在까지 우리가 생각해냈던 많은 概念中에서 가장 훌륭한 地域單位 防衛概念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現 國民總力防衛體制를 指向하고 있는 우리에게 豫備軍制度를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깊이 興味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1. 民堡議, 1811, 丁若鏞著.
2. 韓國史論, 1978, 제 4집, 331 ~ 366 pp, 鄭景鉉著.
3. 軍史, 1981, 제 3 호, 99 ~ 130 pp, 鄭夏明, 李忠珍著.
4. 韓國軍制史, 1968, 近世朝鮮 前期篇, 陸軍本部.
5. 韓國軍制史, 1977, 近世朝鮮 後期篇, 陸軍本部.

---

註 1) 1762.6.16 (陰) 京畿 廣州에서 태어난 丁若鏞 (1762 ~ 1836) 은 朝鮮朝 後期の 前近代的인 國家體制的 諸矛盾과 갈등속에서 10餘年間的 官僚生活과 18年間的 流配生活를 겪으면서도 西歐 文物과 우리의 傳統思想에 깊이 탐익 人文, 社會, 自然, 技術, 軍事 등 諸分野에 많은 研究와 著書를 남긴 實學의 大家이다.

註 2) 丁軍의 編成은 5名 = 1 伍, 2 伍 = 1 隊, 3 隊 = 1 旗로 編成 各 隊와 旗에는 隊長, 旗長을 任命하였다.

註 3) 賑糧이란 堡內無糧 극빈자 또는 軍糧支援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 지급할 食糧.

註 4) 民堡가 私堡인데 比하여 高을 수령이 設置한 堡.